다 기타 암



24 의료기관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

성별 여성 나이 34세	직종 간호직	직업관련성 낮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1 /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0년부터 □대학병원에서 중앙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였다. 2011년 6월 왼쪽 가슴의 종괴를 주소로 병원을 방문하여 영상학적 검사 및 조직생검실시하여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2000년 2월부터 임시직으로 □병원 중앙수수실에 배치되어 수술실 간호 사로 근무하였고, 같은 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2005년 9월까지 수술실 일반간호사로, 2005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수술실 정형외과 전담간호사로 근무하였다. 수술실 일반 간호사 업무는 수술 중 보조 업무, 순환 간호 업무, 물품 관리 업무, 의료 기구 및 기계 관리 업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. 기본 3조 3교대로 근무하였고 월평균 4~6회 가량 밤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. 일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약 2년은 회복실 간호사로서 수술을 끝낸 환자의 활력징후 모니터링, 환자 보온 및 배액관찰, 마취 후 회복정도 확인, 수혈 간호 등을 수행하였으며, 일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도중에 정형외과, 신경외과, 비뇨기과 등 C-arm을 사용하는 수술의 수술 보조로도 참여하였다. 정형외과 전담하면서는 3rd charge 간호사로 근무하였다. 이는 일반간호사와 비슷한 acting 근무를 하였으며, 1st charge 간호사와 동일하였다.

수술 중에는 수술부위에 집도의사 및 어시스트를 서는 의사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보조 간호 업무를 하는 경우라도 1m 정도 떨어져서 작업하게 된다. C-arm의 경우 그 이상 떨어져 있게 된다. 수술 중 C-arm을 사용하는 경우 촬영 횟수는

20~100회 정도였으며,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차폐복을 거의 항상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. (과거에는 차폐복이 너무 무거워 대부분 입기를 꺼려하였고, 차폐복이 부족한경우가 있어 못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.)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암

4 유해인자

- 물리적 요인(유해광선-X선)

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11년 왼쪽 가슴의 종괴로 병원 외래 방문하여 시행한 영상학적 검사 및 조직생검 하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. 수술 전 항암요법 시행 후 유방부분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, 이후 항암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. 2012년 4월 폐 및 흉벽 전이가 발견되었고 항암 치료 도중 폐전이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2012년 9월 사망하였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23세인 2000년 □대학병원에 입사하여 11년 3개월간 중앙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였다. 질병과 관련 요인으로 X-선,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고, 산화에틸렌, 폴리염화바이페닐,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근로자의 11년 3개월간의 X-선에 추정 노출치는 낮았으며 산화에틸렌의 노출 또한 미미하였다.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근무의경우 직업환경의학회의 인정기준검토회에서 제시한 기준인 25년에 미치지 못해 상병에 미친 영향은 작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 끝.